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정무위원회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권한의 위임·위탁 근거 신설〉

■ 이정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5038호)

2026. 3.

정 무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 선 주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정문의원 등 17인
2. 제 안 일 : 2025. 12. 9.
3. 회 부 일 : 2025. 12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·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(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」)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결혼서비스·요가·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.

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.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·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

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
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
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
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)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6조의3(권한의 위임과 위탁)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
<신설>	제16조의4(보고)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의3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

- 현행법¹⁾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

1)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·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(이하 "중요정보"라 한다)과 표시·광고의 방

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·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-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(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」)²⁾하고 있으며, 2025년 11월 개정을 통해 결혼서비스·요가·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³⁾.

□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.

법을 고시(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표시·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.

1. 표시·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
2. 표시·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
 - 가.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
 - 나.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(危害)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
 - 다.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

② ~ ④ (생략)

⑤ 사업자등은 표시·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·광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과태료)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·광고하지 아니한 경우
- 2) 【참고자료】 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」 적용분야 및 업종
- 3) 2025. 11. 12. 개정·시행된 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」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(예식장업, 결혼준비대행업)와 요가·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(표시)하도록 하고, 헬스장·요가·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함.

-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, 현재 표시광고법(중요정보 고시 포함)의 집행을 담당하는 과의 총원은 46명⁴⁾이나, 표시광고감시팀을 제외한 각 과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및 기타 소비자법(할부거래법, 전자상거래법 등)의 집행 역시 담당하고 있어, 46명 전원을 실제 집행 인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,
-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0건, 2024년 1건, 2025년 2건에 불과함.

<최근 5년간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>

(단위: 건)

2021	2022	2023	2024	2025	계
16	11	0	1	2	30

* 조치일 기준

**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관련 사건이 80%(24건)를 차지

(자료: 공정거래위원회)

-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⁵⁾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
4) (본부) 표시광고감시팀 6명, 지식산업감시과 8명 (지방사무소 소비자과) 서울 11명, 경인 7명, 부산 5명, 광주·대전·대구 각 3명 (자료: 공정거래위원회)

5) 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35768호)」 제2조(소속기관)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.

□ 참고로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도 권한의 위임·위탁 근거 및 수임·수탁자의 보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⁶⁾.

문 의 처
02)6788-5115

6)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9조(보고)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39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40조(보고)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【참고자료】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적용 분야 및 업종

구분	분야·업종명	
분야 (IV. 분야별 중요정보)	유전자변형물질	
	상품권	
	소비자안전	
업종 (V. 업종별 중요정보)	제조업	가구
		건강기능식품·특수용도식품
		완구
		의류
		장의
		소형 전자제품
	도매 및 소매업	귀금속·보석
		자동차부품
		주방용품
	부동산업 및 임대업	건축물 분양
		렌탈서비스
		토지분양
	운수업	화물자동차운수
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전화정보서비스
		학습교재
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사진현상 및 촬영
		체형·피부관리 서비스
	교육 서비스업	해외 연수프로그램
	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여행
		체육시설 운영(요가·필라테스업 등 포함)
	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사후 관리 서비스(A/S)
		상조
		결혼서비스
	기타	할인카드 회원권 운영

(자료: 공정거래위원회)